

2025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24-165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11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(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”)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대상 : (재)마포복지재단

나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

다. 출연 필요성

-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재산 및 인건비, 운영비 등의 보통재산 출연 지원
- 다양한 계층의 주민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복지전달체계 구축
- 지역자원의 총량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모금·배분사업 추진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지원 강화 및 민관주민 네트워크 강화

라. 출연금액 및 내용

- 출연금액 : 2,219,311천원
- 출연내용 : 재단 보통재산 지원
 - 인건비 870,900천원, 운영비 및 사업비 240,640천원, 호도밥상 사업비 1,107,771천원
- ※ 기본재산 '24년 출연완료(총 50억)

【 출연금 내역 】

(단위: 천원)

구분		예산액	세부내용	비고
합계		2,219,311		
복지재단 보통재산		2,219,311		
마포 복지 재단 운영 지원	인건비	870,900	• 기본급, 제수당, 퇴직급여충당금, 사회보험료	
	운영비 및 사업비	240,640	• 공공요금 및 제세, 회의운영비, 여비 등 186,040천원 • 재단 나눔활성화 사업, 네트워크 사업운영, 수탁시설 운영관리 등 54,600천원	
	효도밥상 사업비	1,107,771	• 반찬공장 인건비 643,571천원 • 반찬공장, 급식기관 운영 등 464,200천원	

※ 출연에 대한 구의회 의결 후, 2025년도 사업예산(안) 결정

3. 참고사항

○ 관련규정

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 지원)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
(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)

4. 연도별 출연현황

(단위: 천원)

회계연도	출연금			비고
	계	기본재산	보통재산	
2024년	4,196,416	1,500,000	2,696,416	
2023년	1,525,564	1,000,000	525,564	
2022년	999,181	500,000	499,181	
2021년	2,106,235	2,000,000	106,235	